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1년도



목 차

1.	공통	···· 1
•	· 금융정책 일반 ······	3
•	• 금융소비자	· 19
•	· 자금세탁방지 관련 ······	- 53
•	• 기타(공동소관) ······	· 63
2.	은행	. 71
3.	보험	- 87
4.	중소	103
•	여신전문금융업	105
•	› 상호저축은행업 ·····	115
5.	자본시장	119
6.	금융혁신	167
•	• 전자금융 ······	181
•	· 신용정보 ·······	203
7.	기타	221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금융정책 일반

법령해석 회신문(190272)

질의요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카드론,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56)

질의요지	□ 하나의 하드웨어 장비에 각 계열사의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저장설비, 정보통신망, 전자적 장치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인프라 설비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내용 만으로는 해당 인프라 설비 일체가 「금융지주회사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시설 등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논리적 분리 저장] □ 「신용정보법」및「전자금융거래법」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4항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전산시스템, 전산자료 저장설비, 정보통신망, 전자적 장치 등의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73)

	①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관련하여 대학교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② 동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동법 제8조1항 및 2항이 적용되는지
	③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금융회사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지배구조법에서는 법인의 인정여부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6조 제1항 제6호 관련 대학교의 법인 인정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회답	② 다만, 제6조1항6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1항 및 2항이 적용됩니다.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문언에 비추어보아, 대학교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종류별로 거래실적 합계액의 구체적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금융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이었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o 법인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므로, 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o 다만, 국립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76다1478, 2001다21991 등) 등에 따라 법인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 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예, 서울대학교)에는 법인으로 인정되며, 사립 대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등 일률적으로 대학교의 법인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제6조1항6호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조1항 및 2항이 적용됩니다.
	③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문언해석상, 거래실적 합계액은 금융회사 종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29)

질의요지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3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3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은 동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를 통해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의 영업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일 것을 요구하 지 않음

법령해석 회신문(200303)

질의요지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또는 캐피탈사가 그 자회사로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및 동 법 하위 규정에 따를 때, 자회사로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및 감독규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61)

질의요지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간 RP 거래 대상인지 여부 2 기관간 RP 거래가 가능하다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전문투자자의 기관간 RP 매도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① ① 과 같이, 현행법령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간 RP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현행법령 체계상 기관간 RP 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제1항각호에 열거된 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현행 규정이 '일반' 투자자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투자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94)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법」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
이유	□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며,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66)

질의요지	□ (질의1) 계약직(시간제, 유연근무,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가 「은행법」 제 38조 제6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하는 "신탁수 익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3) 펀드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 기에 초과분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지 여부
	 이 미 상환시에는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은 임직원 소액대출의 일반자금대출로 보는 지 여부
	□ (질의4) 은행 재직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 연기 혹은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도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회	□ (질의1) 계약직(시간제, 유연근무, 피크타이머 등) 근로자의 경우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면 「은행법」 제38 조 제6호에 따른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질의2)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 출을 「은행업감독규정」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질의3) 펀드가치 하락 등 담보가치가 변동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담보 추가 요구, 여신회수등)를 수행해야하며,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을 「은행업감독규정」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4) 은행의 임직원이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 연기 또는 연기성 대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제56조에 따른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질의1)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 원에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므로, 은행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직 인력은 규제 대 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질의2)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의 "신탁수익권 등의 담보대출"은 임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부실화 가능성이 낮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으 며, 집합투자증권의 주요 성질이 수탁재산의 종류와 운용방법을 제외하고 신 탁수익권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집합투자증권도 '신탁수익권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 고객과 동 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을 임직 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3) 펀드가치 하락 등에 의해 유효담보가액 초과 발생시 대출 변제기에 초 이유 과분을 전액 상황해야 되는지 여부는 각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 사후관리(담보 추가 요구, 여신회수 등) 절차에 따라 판단될 내 용이며, ㅇ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여신 사후관리(담보 추가 요구, 여신회수 등)가 수행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펀드) 담보대출을 임직원 소액대출 한도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4) 임직원 대출규제는 은행과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도덕적 해이 방지 차 원에서 원칙적으로 임직원 대출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재임 또는 재직이전 실행한 대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금지, 예외허용"이라는 동 규제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은행 재직이전 대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대출이 만 기연장이나 갱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34)

질의요지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금융감독원이 검사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수 있다고 하여, 검사권한을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보조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그 역할이 행정안전부를 보조 하여 검사를 "지원" 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권법*에서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인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예:은행법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이유	□ 이처럼 "검사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한 여타 금융업법 문언, 새마을금고법상 금융감독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새마을금고법 >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74)

	□ 대출관련 부가서비스(대출상품 안내, 대출신청내용 전달 및 회신)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업무위탁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위탁이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문의
	<질의상세> □ 금융기관(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자(이하 "A사")가 대출업무 관련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함
	○ A사의 회원이 "A사 서비스"를 통해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에 대한 대출 신청(만기연장신청)을 함
질의요지	○ A사는 회원의 대출신청 내용을 그대로 제휴 금융기관에 송부함
	○ 제휴 금융기관은 송부받은 대출신청 내용을 토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그 심사결과를 A사에 송부함
	○ A사는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그대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함
	□ A사는 제휴 금융기관의 API를 통해 회원과 금융기관 간의 대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 체결, 해지, 대출실행 업무는 모두 제휴 금융기관이 수행
	□ 대출관련 업무 중 대출상품 소개, 대출신청내용 전달 등의 업무는 업무위탁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업(대출업무)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내용상 A사가 위탁 받아 수행하려는 업무 (부가서비스)는, 대출수요자에게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은행, 위탁자)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는 업무(이하"대출중개업무")입니다.
회답	 따라서 해당 업무는 대출상품 소개, 대출신청내용 전달 수준의 업무이고, 대출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A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이 경우 A사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제1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 해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업무위탁규정에서는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 중 **'은행의 대출'업무에 대한 본질적 요소**를 ①대출심사 및 숭인, ②대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대출의 실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규정 제3조제2항 및 별표2)
- □ '대출상품 소개 및 대출신청내용 전달 업무'는 은행 대출업무의 3가지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 A사가 수행하려는 **대출중개업무도 동일한 수준**의 업무로 은행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별표2>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 「 따 업·	,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 한편, 위 대출중개업무는 **금소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여, A사는 동법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해당업무를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3 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금융소비자

법령해석 회신문(200257)

질의요지	□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범 위와 채권추심에 사용된 법무비용이 간주이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 담보,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나,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 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객의 편익에 일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69)

질의요지	 □ 렌탈채권이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의 양도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렌탈회사는 부실 렌탈채권을 대부업자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범위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차주에게 실질적인 신용공여가 있는 지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한, 렌탈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채권을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대부업법 §3, §9의4)을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대부업법 §19)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법은 해당 채권의 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 대부채권은 금전의 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금전의 대부에 대하여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전의 대부는 직접적으로 금전의 교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어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에 따라, 물품 등 구매에 대한 신용공여의 성격을 가지는 금융리스, 할부금융은 실질적으로 구매자에 대하여 물품 구매에 필요한 금전을 교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 대부 행위로 판단되나, 운용리스·렌탈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1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부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신탁업자와 집합 투자기구도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회답	○ 또한,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사모사채의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모사채의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융위원회고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연3%)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4호는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15)

질의요지	 □ 신용정보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을 해당 신용정보회사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직원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미 퇴직하고 이후 자회사 ○○대부에 입사하여 자산운용업무, 대부업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를 일체 금지시키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감시인의 고유업무만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상 보호감시인 선임에 따른 위반 사항은 없는지?
회답	 □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1호가목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제6항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부수업무 포함)를 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산운영에 관한 업무 및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무(부수업무 포함)를 수행(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하지 않는다면 상기인을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유	회답과 동일

법령해석 회신문(200434)

질의요지	□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글의효시	ㅇ 법무법인이 아닌 개업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보호감시인 선임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개인 법률사무소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6항에 따른 '타 영리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개인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시인 선임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감시인에 대한 대부업법령의 규정은 보호감시인이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개인 법률사무소 소속된 변호사가 해당 개인 법률사무소의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면서 소속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계없이 보호감시인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7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할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개인법률사무소 포함) 변호사가 보호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 충실한 직무 전념성 보장을 위해 대부업체와 '업무시간, 관련 안건 논의 시 이사회 참석, 관련 부서로의 정기적 출근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포함한 근로계약 및 이행을 통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1호 "다"목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호감시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호감시인은 대부업법 제9조의7 제2항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의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이를 감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6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보호감시인은 대부이용자 보호 계획의 수립,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 검 및 개선 등을 담당하고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 며,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거래자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부업자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대부·대부중개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보호감시인 제도의 취지 및 겸직금지의무와 보호감시인의 업무범위를 감안하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할수 없으므로, 법무법인(개인법률사무소 포함) 변호사가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으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통해 보호감시인 업무에전념하고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7)

질의요지	 ③회에 걸쳐 약 90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 차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차주 법인 주식취득,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는데, 대부업법 제8조의 이자율 외의조건을 동법 제8조의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법원은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3다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하고 있으므로, ○ 질의1과 관련된 행위가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행위의 지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2와 관련하여,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대부업법 제8조)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1호에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60)

질의요지	□ 소상공인에게 일정비용(구독료 형태)을 받고, 확인된 판매내역을 기반으로 매출정산 솔루션 제공과 선정산을 집행하고 실제 정산 주기에 판매자 대신 자동으로 회수해 올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회	 □ 귀하의 질의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귀하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2조에 따른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발생한 채권(예: 상사매출채권)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대상채권의 발생 원인, 신용공여 제공 여부, 상환청구권 유무 등 경제적 실질에따라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대상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되고,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등 신용공여성격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61)

질의요지	 □ 당사는 한도미사용 수수료(한도대출의 미사용분에 대해 최대 0.5%까지 매월 후취 징수하는 개념) 신설을 추진중으로, ○ 한도미사용 수수료 신설 후 대부법업 이자율 계산시 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한 대출이자를 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데, 대출금액은 실제 사용한 대출금액이 되는지, 전체 한도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요청
회답	 □ 대부업상 대부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대부업법 제2조제1호)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8조제6항에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 이자율 산정시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별첨1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사례(P.215)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71)

질의요지	□ 대출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융기관과 모집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대출 중개행위가 대출 중개행위, 대부중개업 또는 비제도권금융업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회답	 □ 귀 사가 어떠한 금전적 대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보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계산 서비스, 대출모집인의 목록 제공으로 상담신청만을 대행·제공하는 경우, 이를 대부중개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귀 사의 행위는 사실상 고객과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간 대부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비스 이용자, 금융기관 또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대부중개업을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1조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대부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대판 98도1914 참조)에 해당하고,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등 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23)

질의 요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금지행위)제3항5호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기획·구상하여 보험회사에 상품개발을 요청하고, 상호협의 하에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동 보험대리점만 독점 판매하는 것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에 따른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게 자신에게만 대리·중개 업무를 위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질의요지에서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4호 위반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33)

질의요지	□ P2P플랫폼회사가 건축자금(PF) 분할대출에 대해 플랫폼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수 수료에 대한 간주이자율 계산방식
	 수취가능한 총 수수료(간주이자) 한도액을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또 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인) 해당 수수료는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상 PF대출의 주선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주선수수료의 예에 맞춰 전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약정 기간에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다는 견해
회답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대부일~실제 변제일)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Ⅰ. 대부업법 조문별 해석 / 14.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규제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10도11258 판결)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플랫폼수수료의 간주이자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래의 사유로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① 건축자금 분할대출뿐 아니라 일시지급 대출에도 동일하게 플랫폼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이는 주선수수료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이용수수료 명목이라 보는 것이 타당
	② 주선수수료는 주선의 대가로 대출기간이나 재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 일회 성으로만 수취하므로, 대부약정서에 대부기간 연장시 플랫폼수수료를 추가로 징 구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③ P2P거래구조상 투자자는 대부채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만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대주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부채권은 P2P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하므로 투자자는 상환요구 및 추심 권한이 없음
	④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상 주선수수료와 참여수수료가 명백시 구분하는 경우에 한해 주선수수료 계산방법 적용

법령해석 회신문(210039)

질의요지	□ 비영리재단법인(새마을금고복지회)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PF대출, 기업대출 등 여신행위 영위 예정이 이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 대부업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부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떤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1호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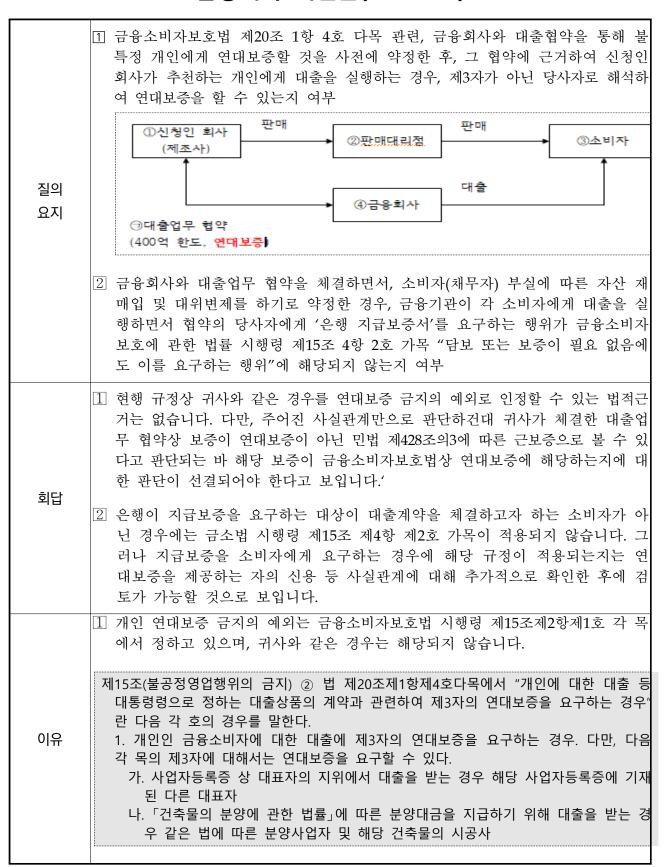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10084)

질의요지	□ 오프라인 대출성상품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주주(동일인)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온라인사업자)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주주(동일인)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개의 오프라인 법인을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2조제1호에서는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위 1개社 전속의무라 합니다. □ 또한 동일인이 각각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다수의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법인을 운영하여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호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2조제1호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2조제1호마목2)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93)

질의요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하 "온라인 사업자")이 온라인상에 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한 후, 고객의 본인 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을 위해 법 소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이하 "오프라인 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사업 자에게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보수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법 제 25조 제①항 금지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위탁하고자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1)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2)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그 예외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서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본문의 예외로 규정합니다. □ 따라서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04)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이는 보증채무인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근보증과는 구별되는 개념인 바, 귀사의 보증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
- ②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대상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아 닌 경우에는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지급보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자의 신용 등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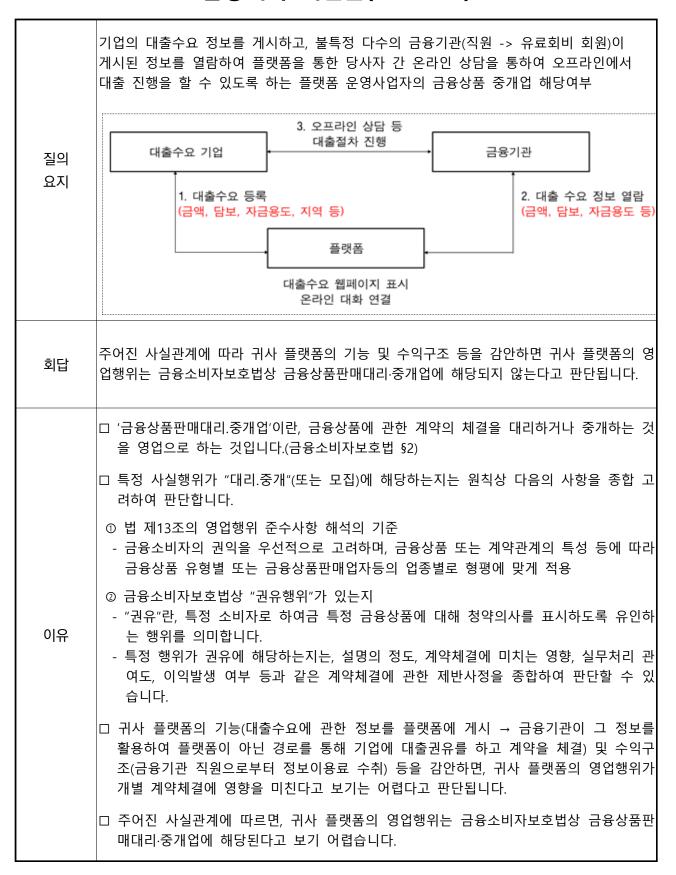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10128)

질의요지	□ 상조회사가 해당 업체의 일부 종업원과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귀하의 질의에서 사업자가 그 종업원 일부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해당 업체의 계속·반복적 대부행위가 고용계약 등에 기하여 동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면 대부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귀사의 서비스 이용자(상조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출하는 경우 ○ 대부업법(제2조 및 제3조)은 대부업을 영위려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업(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93다 54842, 대법원 2008도7277 등)하고 있으므로, ○ 상조회사가 그 고객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부를 한다면 해당 법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2조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례(대법원 93다 54842, 대법원 2008도 7277, 서울고법 71구416 등)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31)

질의요지	 □ A대부업체(대부업과 대부증개업 겸업)와 B대부업체에서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던 중, ○ 최근 1년이내에 A대부업체에서 대부중개업만을 폐업신고(대부업은 계속 영위)한 경우, B대부업체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때 겸직하던 임원이 계속하여 B대부업체의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제6호의2에서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2(제4조제2항제1호에도 해당)의 입법취지는 대부업의 등록과 폐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법행위를 면탈할 목적으로 폐업한 후 재등록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 같은 조문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대부업등의 영업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서 A대부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대부중개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B대부업체 등록시 대부업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유	회답과 동일

법령해석 회신문(210168)



법령해석 회신문(210209)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대부업법 제3조의5 제2항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미비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대부업법 제3조의5은 따른 등록요건 중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포함) 위반으로 벌금형 이 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나, 위반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경미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대부업법령에서 직접 규정 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령상의 등록권자* 등이 위반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회신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등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위탁받아 수행(대부업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3)
이유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218)

질의요지	□ 2021.7.7. 대부업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경과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 만료일이 2021.6.30.로서 2021년 7월, 8월, 9월에 정상적으로 이자금액을 수취함 으로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종전 계약기간 만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할 경우 종전 이자율 24%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압	 □ 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로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는 법령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계약연장에는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대부업법령 시행 이전에 묵시적으로 연장된계약은 개정된 대부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대부업법령 시행일 이후계약의 체결・갱신 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다만,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계약 등을 통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21.7.7. 시행), 동법 시행령 부칙(제31613호)에 따라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27)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 관리할 때 ,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 28 조의 자료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과 관련해서는 금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의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의 보관방법에 대해 금소법상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37)

질의요지	 □ 후 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대위변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위원회)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지 ○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 변제할 수 있다면,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 대위)의 대위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의 요건을 갖추었을 시(채무자의 승낙, 통지)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임의대위 할 수 있는지 여부
합	 □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데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민법상임의대위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원칙적으로대부업법제3조2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합니다. ○ 다만, 보증인·연대채무자 등의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로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등록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대부업법 제9조의4제3항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2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38)

질의요지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2018.4.30. 시행, 이하 "금융위 고시"라 함)의 연체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① 대출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약정금리와 채권자의 자
	금 조달비용을 감안한 채권자 내부금리간 차이가 있는 대출채권(상기 규정 시행이전의 것)을 양수한 대부업체는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대출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자가 당초 여수신 금융기관의 지위까지 승계하여 여
	수신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율까지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③ 실세연동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채권을 확정채권 양수방식으로 양수한 추심업체가 조달자금의 비용 등을 감안해 약정서상 합의된 최고 연체이자율내에서 정상이 자(가산금리)를 조정해 채무자 통보 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COFIX 또는 CD금리의 기준금리에 여수신금융기관의 가산금리를 더해 정상이자를 설정
<u>ប៉ា</u> ស	 □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금융위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대통령령 제28420호, 2018.2.8. 시행)의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인 금융위 고시도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계약이 금융위 고시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후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1 및 질의3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에서는 계약의 요건・효력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 회답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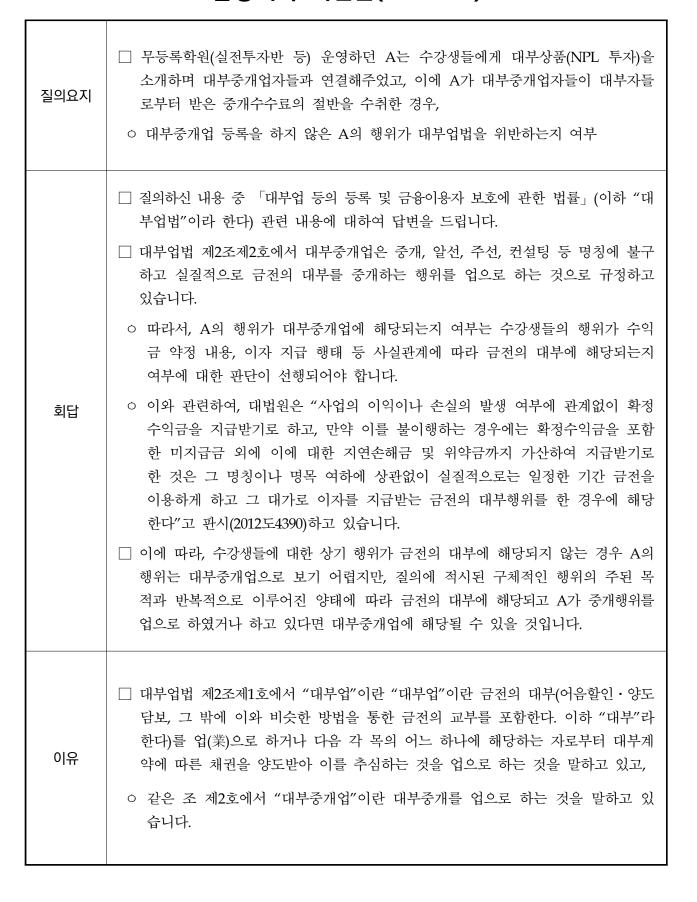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10266)

질의요지	 □ 컨소시엄대출에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비용(대출약정서 작성비용 등)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비용이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주이자에 해당 한다면, 해당 비용의 인식은 "대출월 일시인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대출기간 안분인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합	 □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주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간주이자)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간주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수수료 등은 수취시기에 인식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 수수료 등을 대출시점에 선취할 경우 이는 선이자에 해당되어 대출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후 지급되는 금액이 이자을 계산시의 원본으로 간주되므로, 추후에 동 원본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 간주이자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276)

질의요지	 □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금전의 대부 과정에서 담보로 취득한 채권(전환사채권)에 대하여 동 채권의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적용을 함에 있어서 ○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약정이자율4%, 가산금리5%)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취득채권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자율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3%를 초과하는 가산금리(초과금리 2%)를 적용할 수 없는지
회	 □ 절의하신 내용 중 담보로 취득한 채권은 대부계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자의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하 "금융위 고시"라 한다)에 따라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금융위 고시 부칙 제2조) □ 귀 질의에서, 담보로 취득한 채권이 금융위 고시 시행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이라면 계약사항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것이나, 금융위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개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유	□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302)



법령해석 회신문(210310)

질의요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 회사에서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보호감시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히	 □ 자산규모가 일정 규모(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고(대부업법 제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또는 대부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미만인 대부업자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7항)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대부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유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338)

질의요지	□ 기업한도 대출을 진행시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에 대한 수수료(한도미사용 수수료)를 징수할 때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정방식에 대한 질의
습u iSI	 □ 대부업법 제2조제1호에서 대부란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8조제6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한도약정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최초 한도개설시 한도약정수수료 등을 차감한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율을 가산하여 이자율 초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서,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지급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한도미사용수수료에 대한 이자율은 약정된 금액(최대 인출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이유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382)

질의요지	□ 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취급수수료 인식과 관련한 대출 원본이 되는 금액에 대해 질의
다 회	 □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고, ○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 당시에 약정된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실제 교부된 금액을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시의 원본으로 보아야하며, ○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원본금액에서 상환되는 금액 중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질의에서 선이자(간주이자)인 취급수수료를 선취한 경우로서 일부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받은 금액에서 선이자와 상환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회답과 같음

법령해석 회신문(210391)

질의요지	□ 채무자가 금리인하 요구 시 금리인하 대상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금리만 변경(인하)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합 회	 중전 우리 위원회는 과거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도대출의 대출금 추가 인출신청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인출시 별도의 심사절차(신용조회 등) 등을 거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만기 등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대출(인출) 건을 "새로운 계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의해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대부분 고객의 신청에 따라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사정(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동 심사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의 중요사항인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재약정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기존 대부계약이 재체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계약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부계약의 신규체결이나 갱신계약 체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200177)

질의요지	□ 대주단 A은행(대리금융기관), B은행, SPC사, 차주인 시행사 갑, 부동산 신탁회사 C 간 법률관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B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업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 은행에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 법에 따라 C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금융거래등의 당 사자인 A은행입니다.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1항). 업무규정 제20조제5항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탁법상 신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부동산 신탁회사 C가 A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한 신규계좌 개설 시 B 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A은행이 부동산 신탁회사 C에 대한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B은행의 경우, 해당 계좌개설과 관련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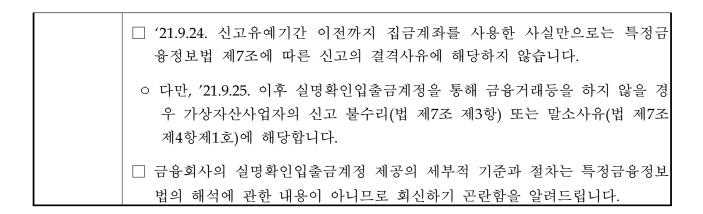
질의요지	□ 전자지급결제대행(이하 'PG')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니라,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여부
회	 □ PG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3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제3자에게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5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 관련 조항에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가맹점정산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PG업자의 고객으로서 고객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15)

질의요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도입 시 사용되는 기제출된 신분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할 경우 적 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39조 제2항의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실명확인증표 확인 외 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에 따라 기제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자료·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39조 제2항에서는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연락처를제외한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진이 부 착되어 있고 연락처를 제외한 검증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서비스를 통 해 실명확인증표 확인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 인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필요충분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을 전제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된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에 따라 기제 출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객확인 수행시 적 절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50)

질의요지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의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해당 의무가 '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 및 위반시 벌칙 적용 여부
2-14-4	□ '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 결격사유가 되는지
	□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 준과 절차의 내용
회답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부터 6개월 간 적용이 유예 되어 있습니다.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 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 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동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가 해 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내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 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특정금융정보법(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 자산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부터 6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81)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 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이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47)

질의요지	 □ 특정금융정보법 부칙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제2조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규정뿐만 아니라 같은호 나목의 규정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즉,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나목 이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칙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제2조단서의 적용 대상은 이 법시행(2021. 3. 25.)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 9. 24. 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법 제7조제3항), 직권으로 말소(법 제7조제4항)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를 종료할 의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목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은 2021. 3. 25.부터 원칙적으로 은행에 적용이 됩니다.
이유	 □ 부칙 제2조단서의 적용 범위는, (i) 이 법 시행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자 영업을 해 온 자로서, (ii) 2021. 9. 24.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하고, (iii)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제5조의2제4항을 적용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법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은행이 법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를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제5조의2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기타(공동소관)

법령해석 회신문(190255)

질의요지	□ 기관투자자만을 상대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지
회답	 □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각종 공시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구축·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회사의 원칙적 공시방식인 '일간신문 게재'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유	 □ 상법에서는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일간신문 계재'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적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 商法 \$289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특례적 공시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만을 주된 공시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일간신문 게재'를 허용하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간신문 게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존재 □ 다만, 자본시장법이 상법에서 원칙적인 공시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일간신문 게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 회사 규모가 영세하거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시의무 이행 만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간신문 게재'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68)

질의요지	1. 개인신용정보의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일자별)로 적용하여 계약 기간 만료 5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상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건별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고객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상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업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해당 자료를 5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해당 조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귀사가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고객확인자료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을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 건별 기준(일자별)을 적용할 수 없고 인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 한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료를 5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97)

질의요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회답	□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합니다.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자본시 장법령에서 정한 업무는 금융당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없이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금융투자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제 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 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여전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도 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겸영업무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항 제2호는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여전법 제2조제14의5호 및 동법 제44조에 따르면, 신기술사업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 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법령해석 150207 참조)

- □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 고,
 -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 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겸영업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법령해석 회신문(190197)

질의요지	 □ (질의1) 채무자 및 계열회사가 금리인하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은행이 담보와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주단 공동의 신용공여가 이뤄지는 대출의 경우(예:신디케이티드론) 은행이 총 여신금액으로 차주 보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서 정한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습 '	 <질의 1 관련> ○ 은행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10.28일 입법예고된 금8소비자보호법 시행령안(제15조제6항제2호나목)은 대출금액에 대하여 통상적인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기금에서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적으로 제3자의 보증(연대보증을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 2관련> 신디케이티드론이라 하더라도 ①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②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3항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② 특정 대출계약에 대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8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채무 중복보증'에 해당합니다.

<질의 1 관련>

- □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 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u>요구</u>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은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통상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은행의 요구가 없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관련>

이유

- □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개별사안별로 필요시 담보가치금액(담보유효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 대출담보비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라도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이라면 불 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2개 이상 계열회사의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主)채무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에 해당*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160684)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200065)

질의요지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상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 적용시, 재약정이 이루어지는 여신의 '원만기'에 대한 판단기준 *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 산출된 금액이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 결산시 (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5.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50%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환산율 20%
회답	□ 여신의 재약정이「은행업감독규정」<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i)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ii)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2>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은 '원만기'의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에서 '신규대출'의 정의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1.라.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 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i)여신 재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상 신규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ii)신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 여신 약정일을 기준으로 원만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외항목의 신용환산율 적용기준

환산율*	항 목	예 시
100%	(1) 일반 채무보증(대출과 유가증권에 대한 보 증신용장 포함)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사채발행 지급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등 신용파생상품 매도 유동화 익스포져에 해당하 는 ABCP 매입약정 및 신 용공여약정 등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확정 보증신용장 등)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4) 원만기 1년 초과 기타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 관련 약정 포함)	 수입화물선취보증,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확정 수출선수금환급보증 등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등
20%	 (5) 단기(원만기 1년 이내)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상업신용장 등) (6) 원만기 1년 이내 약정(할인어음 및 외국환관련 약정 포함) (7) 특정거래관련 미확정 보증신용장 	 신용장 개설관련 지급보증 등 당좌대출, 회전대출약정액 중 미인출한도, 미확정 수 출선수금환급보증 등
0%	(8) 은행이 사전통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취소 가능한 약정	

^{*} 은행은 감독원장이 승인한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서 산출된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내부모 형을 승인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이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은행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경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유동화익스포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를 적용함

법령해석 회신문(200150)

회답 □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은행 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 예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제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은행 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은행업감 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런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은행법 시행령 제 18조)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 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아 참고로 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회답	
	이유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86)

질의요지	□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회답	□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 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은행법」제27조의2 제2항 제9호는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콘 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관련 연수'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43)

질의요지	□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일 최대 5만원)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가 아닌 기간에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규상 구속성 예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은행이 매일 가맹점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일 최대 5만원)이 자동이체 되는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 기준으로 1%를 초과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제6호의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 예금·적금의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제6호,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제6항제1호) ○ 이에 동 적금상품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제1항제6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1항제1호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93)

질의요지	 □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은행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 ○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55)

질의요지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경우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사인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을 소개해주는 등 단순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금융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므로,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64)

질의요지	 □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 발생하는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syndicate)을 구성하여 단일 계약서에 따라 대출하는 방식 ○ 개별은행의 대주단 참여비율에 대주단의 지분증권 담보 취득 비율을 곱한 값이 100분의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지여부 ○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 보고자(은행)을 지정하여 해당 은행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도 되는지여부
회답	 □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유	 □ 「은행법」이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여타 담보대출과 달리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차주인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그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커질 우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는 경우더라도 100분의 20을초과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동질권설정을 한 경우에는 은행별 대주단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개별은행들은 「은행법」 제47조에 따라 100분의 20을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하는 대출을 한 것으로 각각 보고해야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21)

질의요지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을 외부에 사용토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 또는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을 외부에 사용토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문의주신 '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의 구축, 사용 등은 비대면 금융상품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 하는 업무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사업의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7. (중략)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법령해석 회신문(210146)

질의요지	 □ A은행이「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①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 ②특정고객에 대한 사은품 등지급)에 대해 ○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상 이익제공의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A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동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제공(상기 ①, ② 포함)에 대해서는「은행업감독규정」제 2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 A은행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규제적용특례(「은행법」제27조의2)를 부여 "받았으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라특례 인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은행법」상 규제내용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A은행의 부수업무로 일시적으로 허용 ○ 「은행법」제34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영위 중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정상적인 수준 이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이사회 보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한편,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등이 이루어진 금융거래약관에 따라 거래 관련 수수료(대출거래자의 중도수수료 등)를 감경 또는 면제해 준 경우 동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관에 따른 요금할인 등에 대해서도 동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55)

질의요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유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은행법」제37조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규제의 완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 제정('20.8.12)에 따라벤처투자조합으로 승계*(벤처투자법 부칙 제6조제4항)되었고, *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벤처투자법에 벤처투자조합의 설립요건(운용주체, 투자대상 등), 목적 등도 유사 ○ 「벤처투자법」부칙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벤처투자법」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현행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는 은행의 벤처・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제고하기위해 벤처투자펀드에 대한 다른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로합의 도입한점을 고려하였을 때,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363)

질의요지	□ 은행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 요청에 따라 은행의 특정 고객군에 게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광고(앱 push 메시지, 배너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다른 회사의 상품,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에 준하는 온라인 (on-line) 관련 설비로써 은행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물적 설비"에 포함되므로,
이유	○ 고객의 계열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판매는 계열사 웹페이지나 앱에서 실행되고 은행은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서비스 정보만을 제공한다면
	○ 은행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계열사의 상품,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 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 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는 광고대행 업무 영위와 관련하여 광고에 활용되는 매체에 대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은행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광고대상 고객군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u>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u> 1∼10. (생략)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2. (생략)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생략)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법령해석 회신문(200060)

질의요지	□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 약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
-151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 행령 제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답	□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u>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u> 과 관련하여 <u>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u> 하고 있는 바,
	○ <u>상법 제739조의3[*]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u> 되는지에 대해 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61)

질의요지	□ 현행「보험업 감독규정」제4-35조의2 및「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i)전화 등 음성통화, (ii)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회답	□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방법을 전화 등 <u>음성</u> <u>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u> 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I 음성봇의 경우,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이「보험업 감독규정」제 4.35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96)

	□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②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이하 생략)
	□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답	○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 1 2 1 3 1 2
	ㅇ 자금 차입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급 차입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후
	순위 차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이유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펀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여부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
	이며,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수취 나는 거이 타다하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4)

질의요지	□ 변액연금의 기본보험료를 증액하고, 해당 증액보험료에 대해 신계약비를 부과하여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하가 제안하신 변액연금보험에서 보험료 증액제도는 그 실질이 보험료의 추가납입과 동일하므로 기존의 추가납입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128조의3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및 [별표7],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55 조제2호
이유	 □ 통상 보험금 증액은 주로 보장성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증액하고 보험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변액연금보험에서 운영 중인 추가납입제도는 보험회사의 추가 위험부담 없이 보험료적립금만 증가시키는 제도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제2호에 의해 기본보험료의 2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변액연금보험에서 추가납입제도와 별도로 보험금 증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가시켜야 하나 ○ 변액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에서 연금개시 전 보험료 중 위험보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증액의 의미가 없으며**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에서 보험료의 0.5% 미만 ○ 또한 증액을 이유로 보험료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료적립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이는 추가납입제도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의 보험료 증액제도는 추가납입제도와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서의 보험료 증액제도는 추가납입제도와 되었습니다.
	제도와 그 실질이 동일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58)

질의요지	□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보험료 할인'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로 전환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61)

	①「보험업 감독규정」개정시(금융위 고시 제2019-59호)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4조의2제7호가 신설된 이유
질의요지	② 「보험업 감독규정」 제7-49조제2호가목1)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근로자의 판단 기준
	③ 「보험업 감독규정」제1-4조의2제7호 신설에 따라 제7-49조제2호가목2) 및 3)의 비영리법인 등은 전문보험계약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아래 이유와 같음
	① 「보험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4조의2제7호가 신설된 것은 '5인이상 고용사업장'이 전문보험계약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감독규정 개정 이전에는 감독규정 제 1-4조의2제1호에 따라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였으나, 감독규정 제1-4조의2제 7호 신설을 통해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유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감독규정 제1-4조의2제7호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제7-49조제2호가목2) 및 3)의 비영리법인 등은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신설 2019. 12. 18.>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상 단체

-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u>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u> <u>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u>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u>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u>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 라.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 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법령해석 회신문(200164)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온라인 창구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해지 요청, 약관대출 요청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금액(예: 30억원)이 유지되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 위 행위가 「보험업법」상 '대주주와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체사유 발생시 「보험업법」제112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매번 거치지 않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u>62 67 22 64 22 64 7 7 7 7 7 7 7 7 7 </u>
회답	① 질의하신 행위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주2)에서 정하는 <u>신용공여</u>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와의 <u>신용공여에 해당</u> 합니다.
	② 특정금액(예: 30억원)을 설정하고 잔액 부족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는 경우 <u>반복적인 동종거래에 대해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이사</u> 회의 <u>포괄승인이 가능</u>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감독규정」별표1의2는 <u>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예치</u> 글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별표1의2 주2)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 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따르면 예치금이 <u>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u> 경우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u>신용공여 산출대상의 예외 요건에</u>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보험업법」제111조는 <u>신용공여 전에 미리 이사회의 의결</u> 을 거치 도록 하고, <u>신용공여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u>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원회 보고는 개별 거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반복적인 동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절차 및 내용의 공정성에 대해 이사들이 알고 결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성실한판단에 따라 특정기간 및 한도 등을 설정하여 포괄승인 및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83)

	□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보험에 가입하려고 함
질의요지	□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
	□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u>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u> ,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u>수수료는 위탁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u> 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u>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u> 하거나 <u>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u> 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31)

질의요지	 □ ①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보험업법」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 ②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답	□ ^①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②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u>스포츠단 성적</u> 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u>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u> 으로 판단됩니다.
아	 □ 「보험업법」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처럼, [®]특정기간(경기시즌)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보험 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60)

질의요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 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 지 않습니다.
이유	□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합니다.(금융규제 민원포털 '20.11.6일 등록)

법령해석 회신문(200433)

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 관련 약관,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상품" 대신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 보험관계법령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보험업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유	 □ 「보험업법」등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보험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험약관 등은 보험업법령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상품"을 "보험서비스"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용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법령해석 회신문(210004)

질의요지	□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다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이하'반대 스왑거래')를 체결할 때 반대 스윕 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의한'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호 가. (6)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 가 일치하고,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경우					
	 다만, 반대 스왑거래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를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총자산 대비 6%(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3%) 이내로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및 제106조 제1호제10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 다만,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거래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므로 비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호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호는 한도 규제 예외가 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의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한도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 가 일치하고,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경우					
	○ 즉, 통화스왑과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4호 가. (6)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위험회피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도규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11)

	□ 보험회사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이하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58
	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② 법 제114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이하 생략)
	□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
	업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회 답	스 디마, 비칭칭기가 피트이 이기거기에 가지자 여창려야 체기치 수 이느 거
	○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
	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
	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차입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
	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목적을 충족하는 경
	우에도 자급 차입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후순위 차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
이유	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
	권을 매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코드시 됩니 그 이 바이의 네가 시면 시시되기스 기원들이시되니 뭐. 그
	○ 펀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여부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
	이며,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수취·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 교에는 것으로 포는 것이 너렇겁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
	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여신전문금융업

법령해석 회신문(200221)

질의요지	□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해당 신용카드 보유자의 국적/소재지를 불문하고 신용카드가 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해외 신용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 (신용카드번호)의 경우,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내·외국인(법인 포함, 이하 같음)의 해외신용카드 정보 중 '신용카드번호'는 해당 내·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데 대한 여신전 문금융업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전법 제2조제5호가목) "신용카드회원등"은 여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 업자와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작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가드를 소지한 자 ** (신용카드가맹점표준약관 제19조제2항) 1)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 PIN 및 PIN를록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2)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보유가 금지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신용카드" 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금전채무 상환, 사행성 채화·용역 등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 로서 국내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용카드회원등"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 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하는데 대한 별도의 제한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내·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3항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라고보기 어려우므로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해당 내·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번호를 보관하는 데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 PIN 및 PIN 블록과 같은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고해석*됩니다.
- * 여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는 국내 카드사 외에도 국내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카드사가 발행한 것도 포함하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제2항에서는 법 상 신용카드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 유효기간, 검증값, PIN번호 등의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
- 또한, 내·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 정 제24조의6제3항과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제2항에 따른 제한요 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 한편,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외 유효기간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 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62)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취득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2조에 따라「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가능한지 여부
회답	□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여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 취득하는 경우,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다른회사의 지분을 단독으로 20% 이상 취득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나, ○ 여전법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건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여전법이 우선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신기술사업자의 지분 20~49%를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06)

질의요지	□ 여전법상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가능한 상품권의 월 100만원 이용한도 적용 범위에 '신유형 상품권(예 :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이 포함이 되는지?
회답	□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업자가 상품권 판매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이 경우 월 100만원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 금지 대상으로,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금융투자상품 / 다.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을 결제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유	○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 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 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 하는 경우에도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상품 권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결제금액을 합하여 산 정
	□ 여전법에서는 "상품권"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의가 있거나 타 법을 준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기존 상품권(예: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 규율하는 바와 같이, 신유형 상품권(예: 공정위 표준약관상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1)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가 금지되고, 2)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100만원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45)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질의요지	□ 교회 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금지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여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금용투자상품 / 다.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 한 풍숙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 • 여전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 외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목)"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나목)" 를 말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 다만, 개별 법령상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예) 정치후원금,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 한편, 교회 헌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기부금품과는 법적 정의,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는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결제대행업체의	회답	□ 교회 등 종교단체 헌금의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받는 것은 가능하나, - 교회 헌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제공을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금지 항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 (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제금지 대상 : 가. 금전채무의 상환 / 나. 금융투자상품 / 다. 사행성 게임물의 이용 /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형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금전 지급 등 여전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 등을 하는 자(가목)"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나목)"를 말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제공 등이 수반되지않는 신용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개별 법령상에 신용카드 남부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이 정치후원급, 국세 등은 개별 법령에 신용카드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한편, 교회 헌급의 경우 「기부급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급품에는 해당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기부급품과는 법적 정의, 성격 등을 달리하고 있다고 관단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금품에는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價徵)로부터 모은 금품을 기부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때, 교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결제대행업체의하위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납부받는 것은 가능하나, 교회 헌급이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로서 납부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완행당 전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완용되었다면 함께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해당 신용카드결제는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고 완성되었다면 함께당 전략하다면 함께당 전략하다면 함께당 전략하다면 함께당 전략적 한편 전략적 함께당 전략적 전략적 한편 전략적

법령해석 회신문(210151)

질의요지	 □ 카드사가 TM업체(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①TM업체는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②소속 상담사는 1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 관련 업무 영위시, ○ TM업체 및 소속 상담사를 여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제휴 모집 법인 및소속 임직원으로 보아 여전법상 등록 및 1사전속 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하여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업체가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소속 직원은 1개 카드사의 상품(TM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에 한한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 여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지
718	위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TM 업체와 소속 임직원은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제14조의2제2 항 및제14조의5제3항 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14조의2①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②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 ③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한 자(이하 '제휴 모집 법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	 한편,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❷모집인, ❸제휴 모집 법인은 모두 여전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해당하여, 여전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5제3항 등에 따른 모집시 금지행위가 공통적 으로 적용되며,
	○ 이에 더해, ②모집인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여전법 §14의3①),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 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등(통칭 1社전속주의, 여전법 §14의5②) 여전법상 추가적인 규율이 적용됩니다.

□ 한편, 여전법상 '제휴 모집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i)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여전법 §14의2①iii), (ii)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과거 법령해석('16.1월)에서도 카드회원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휴 모집 법인에 해당하여 여전법상 모집인에 적용되는 1社 전속 의무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 따라서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업체(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TM 업체 소속 직원은 TM 업체와 카드사와 제휴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 범위 내에서 1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 해당 TM업체와 그 소속 직원은 여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제휴 모집법인 및 그 임직원의 지위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제14조의2제2항 및제14조의5제3항 등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64)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실제 지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의 면적을 호텔 운영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9조는 여전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본점·지점, 그 밖의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 연수원, 시설대여 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 ○ 또한,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고유업무의 해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전사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연의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고,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9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임대가 곤란합니다.
이유	 이 위 회답내용 참조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49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10조 -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제7조, <별표1의3>

상호저축은행업

법령해석 회신문(200399)

	□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 다른 공
TIO	간을 업무용으로 확장하여 사용할 경우
질의 요지	
	ㅇ 해당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점등과 별개로 신규 지점등 설치
	인가를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이 기존의 인가를 받은 지점등과 동일한 건물내에서 공간을 확장
	하여 사용할 경우
회답	. 기존계 시키른 비스 키키드시 전에 추키되다 시민계 에키 버트크 키키드
	○ 기존에 인가를 받은 지점등의 형태·추가하려는 업무에 따라 별도로 지점등 설치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시한/기를 받아야 하는 시 역구가 될다질 구 있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은 지점등*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오시작는 영합는 시험 6 거 역 6 에 데에서는 필프로 비장이고 있지 당합니다.
	*지점 • 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 • 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
	○ 다만, 인가실무상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
	를 요하지 않고, 별도의 건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요하
	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지점등'설치 인가를 받고 동일한 건물 내에서 확장 시 일
이유	반적인 경우에는 신규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출장소의 경우에는 법규상 연면적·인원 제한'이 있고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 : 400㎡ 이내, 인원 : 10인 이내(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2조) **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호의 업무 및 그에 각각 부대되는 업무
	MACSE MITZMITSMITZ MOZ & MIOZA EL & JAN LI LANAC EL
	ㅇ 동일한 건물 내에서의 확장이라 하더라도 확장으로 인해 출장소, 여신
	전문출장소의 법규상 제한을 초과하게 된다면 사전에 별도의 지점 설치 인가
	를 신규로 받아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45)

질의요지	□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법」(§10①)에서는 저축은행이 합병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합병후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는 미리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합병심사 시,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유	 □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을 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피합병회사의 영위업무, 자산, 법률관계 등을 승계하게 될 것이므로, ○ 합병으로 인하여「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없도록 해당 위반사유를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합병시 합병후 법인의 대주주는「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1항의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을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 합병심사 시, 합병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는 동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법령해석 회신문(190192)

질의요지	□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제3자에 주식을 대여한 경우, 대여된 주식(또는 그 인도청구권)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 는지 여부
회답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라,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1호다목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정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여된 주식의 인도청구권은 투자자(대여자)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244)

질의요지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증권담보대출시 법인 대표이사 또는 제3자를 연대보증 입보시키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담보대출시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증권의 담보 징구를 금지하고, 담보비율 미달시 추가 담보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연대보증 입보와 관련하여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관련 정책 등에서 연대보증 입보를 제한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	

법령해석 회신문(190307)

질의요지	□ 환차손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 회원조합의 상환 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할 경우,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것인지, 일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
회답	□ 이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외화예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구조, 투자·회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투자성 있는 예금'이라는 표현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귀 사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등과 관련한 근거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상품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판단하여 운영·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이하 생략)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제2 장·제3장·제4장제2절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편제1장은 투자성 있는 외화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46)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 신기술투자조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6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여전법상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이유	 □ 여전법상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9호에 따라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 반면,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조합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요건(^①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②관련 자료를제출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등)을 갖추면 전문투자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50)

질의요지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함에 있어 신탁계약기간, 손익의 분배, 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회답	□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등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법 제76조제 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 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1조 제1항)
이유	□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7항)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자본시장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4)

질의요지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계좌 로부터 일임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집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상 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잔액을 환급하여 투자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구체적인 투자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환급 지시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환급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위반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①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할 때에는 그 겸영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투자자로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일임업자가 겸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인 선불전자지급 수단 관리 및 발행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 제1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②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를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구체적 인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환급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일임계좌로 부 터의 이체 또는 투자자 일임계좌로의 금전 이체의 경우에는,
	 해당 이체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전 위임에 따라 일임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 투자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7)

질의요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크라우드펀딩)이 종료된 후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에 따른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해당 동영상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면서 "임의 삭제·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없는 사항이라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삭제 또는 비노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투자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위하여 공모 규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게시하도록 하고(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2항), 투자자들의 의견이교환될 수 있도록(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하는 등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면서 "임의 삭제·수정이 금지된 투자자 의견"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요청에따른 삭제·비노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이 삭제·비노출 등을 요청한 정보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해당 정보의 삭제·비노출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이러한 삭제·

법령해석 회신문(200072)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회답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뿐만 아니라,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문서들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가능합 니다.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12에서는 비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모두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기록·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73)

질의요지	□ 일임 투자대상자산에 저축은행 예치금을 추가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 산을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회답	 □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일임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로의 이체를 지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투자일임재산을 금융기관 예치 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 치금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이체하여야 하는 바, 이 과 정에서 투자자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체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9호의 나목*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지 못하도록 금지
이유	□ 동 규정은 일임업자가 위임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예탁·인출하는 과정에서 투자일임재산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일임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예금상품에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직접 일임업자의 영업점을 내방하여 예치금 계좌를 개설 및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이 일임업자의 신용 리스크 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자본시 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투자일임업자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여 일임 계약에 명시된 예치금 운용 목적 외의 이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26)

질의요지	□ 단위형 개방형 펀드의 경우 1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 출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회답	□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년 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비치·공시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와 간이 투자설명서를 연 1회 이상 수정하여 제출·비치·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최신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합입니다. □ 더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위형 편드의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서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단위형 펀드의 경우에는 1년마다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비치·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31)

질의요지	□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단독(100%)이나,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C)일 경우, A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및 C로서 사모단독편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 에 대해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192조제2항 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는 투자자가 1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등 법령에 나열된 자가 단독 투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224조의2 및 제231조의2 참고)
	□ 따라서, B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인 C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B집합투자기구는 의무적 해지·해산이면제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만,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은 실질적인 투자 자수가 50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사모펀드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42)

질의요지	□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파견과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 전출조건으로 계열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제2호에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21.5.20일 시행)되었습니다. ○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인사의 적정성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인사 처리가 교류차 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기 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해석 회신문(200255)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사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이 동 계좌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회사채(후순위채권)을 매매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이 적용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상의 주권관련 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3호, 제68조제4항은 주권관련 사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규정
이유	

법령해석 회신문(200290)

질의요지	□ 2011년 다수의 수익자로 설정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가 2020년 8월 1인이 된 경우, 해당 펀드에 해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 '11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제11845호) 부칙 제8 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인이 되었더라도 해지·해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192조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이를 지체없이 해지 또는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 다만, 자본시장법 부칙(제11845호, '13.5.28) 제8조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15.1.1) 이전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개정조항(법 제192조제2항제5호, 법 제202조제1항제7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 이전인 '11년에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제11845호) 부칙 제8조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일('15.1.1) 이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1인이 되었더라도 의무해지·해산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14)

질의요지	 □ 투자자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포트폴리오로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서비 스와 그 결과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다른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공유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되, 광고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 및 시행령 제102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동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투자자의 모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일 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또는 플랫폼 의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73)

질의요지	□ 이해관계인이 되기 3개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예 치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에서 금지 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하신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개시된 거래의 존속 이나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예 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84조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이해상 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4호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바,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37)

질의요지	 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그 특정인에게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변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하되, 판매가격을 달리 설정하여 특정인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②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시점의 차이를 두어 특정인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회답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 하여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21.4.30) 보도자료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200452)

질의요지	□ 금융투자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21.5.20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만약 시행령 이전이라도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한지?
회답	 □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중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21.5.20일 시행)되었습니다. ○ 즉,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만큼,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성 여부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이 상기 규제대상 내부통제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셔서 수행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 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의 업무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 3. 내부감사업무

법령해석 회신문(200454)

질의요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제5항 중 "해당분야"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 공인회계사의 경우 동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해당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자가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하기 위하여는 "회계 팀"과 같은 회계와 직접 연관된 부서의 종사만 해당하는지, 공인회계사의 유관업무(재무, 투자 등)도 해당분야의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회계 관련 업무(제1호) 또는 세무대리 업무(제2호)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특정 전문 자격증 보유자가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취지는 ○ 자격증 취득과 함께 일정기간 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해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 본업이 아닌 부대적 성격의 업무까지 해당 자격증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라 본업으로 볼 수 있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세무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그 밖의 업무는 부대적 성격의 업무로서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법령해석 회신문(210009)

질의요지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 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2020.11.27.) 결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문안·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규율함 ○ 제도의 취지 및 연혁적 측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제도는 舊「증권투자회사법」 상 '일반사무수탁회사'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30)

질의요지	□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청약을 당사가 아닌 다른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한 경우에,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당사 계좌로 이체하여 매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모주 청약 을 한 다른 증권회사 계좌에서 매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대	 □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및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모(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에는 둘이상의 회사를 통한 매매가 허용되나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라 하면특정 증권에 청약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 해당 증권을 매도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계좌(질의상의 당사계좌)로 이체한 후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유	※ 2011. 1.10 유권해석 참조

법령해석 회신문(210040)

질의요지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재신탁하는 방식으로 금전 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4조제3 항은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4 조제1항과 영 제97조제1항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제83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재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58)

	,
질의 요지	현재 회사의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A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직무제한 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행중인 용역업무를 수개의 과제로 분리하여 일부 과제를 제3의 법인으로 이 관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판단되며, A회계법인이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무제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용역업무를 수개의 하위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3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이유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자료 작성이나 재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모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그 자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업무 관련제한이 적용). A회계법인이 수행중인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용역을 수개의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3의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리된 개별 업무의 세부 내용이 재무정보체계의구축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의 분리 가능성 및 그 정도,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의 업무 비중 및 상호간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업무를 수개의 단위로 분리하여 별도의 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사실 만으로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

법령해석 회신문(210065)

질의요지	 □ 관련 법령에서 임직원의 1인1계좌 예외 경우로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공모청약으로 받은 증권을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해서 거래 한 후, 청약에 참여한 계좌를 1. 바로 폐쇄해야 하는지 2. 청약만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청약계좌에 매매거래가 없다면, 계좌를 유지한 채 다음 청약에 참여해도 되는지 3. 2번이 가능하다면 가능여부가 법령에서 정해지는지,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회답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제2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예외사유로서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동법 6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제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질의상의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 후 매매해야 합니다.
	□ 계좌의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4항 각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법령해석 회신문(210067)

질의요지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 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108조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제10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환매조건부 매매인 경우 등의 경우,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금전을 재원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등 은행의 대출업을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에서 금지되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행위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77)

질의요지	□ 기업금융업무부서 내 신기술사업금융업 수행팀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출자·운영하는 업무를 개정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 최근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21.5.20일 시행)되었습니다. ○ 정보교류 차단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상기 업무의 적정성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유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문의하신 업무 처리가 교류 차단대상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가운데,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해석 회신문(210105)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질의요지 고유재산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 회답 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 및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에 응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습 니다. 이유 □ 그러나,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재산간 거래는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 투자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를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고유 재산간 거래에 준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11)

질의요지	□ 자기주식 중 수종의 주식을 취득·처분할 때, 취득·처분 금지기간 제한이 동일 한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 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은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규정 형식,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
	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O 종류주식 상호간에도 주가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번한 종류주식 취득·처분이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취득 후 6개월간 처분금지 및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의 취지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 인 시장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의2②).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주식"이라고 규정하여 주식을 종류별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순위 및 의결권행사 가능여부(우선주), 다른 종류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여부(전환주) 등에 차이가 있을 뿐, 회사의 가치를 반영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여
	- 종류주식 상호간의 주가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빈번한 종류주식 취 득·처분은 다른 종류주식의 시장가격에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입니 다.
	* (예시) 회사가 취득한 우선주를 소각하는 경우, 주당순이익의 증가로 보통주의 주가 상 승 등 ※ 회사는 우선주 매수 후 6개월 이내 보통주를 매도한 임원 등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자본시장법 §172③) 이는 종류주식 상호간 주가에 서로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규정 형식, 자기주식 취득·처분 금지기간 취지 등에 비추어 금지기간은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37)

질의요지	 □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증권사가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안내하고,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
회답	□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 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모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는 투자권유에 해당될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 (유권해석 160973) 표현상 '소개'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1) 신탁계약의 체결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업자의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2) 단순히 소개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건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 시 투자 투자권유에 해당될소지 ○ 해당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51조·제52조에 따라 개인인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회사인 증권사가 해당업무를 위

법령해석 회신문(210144)

질의요지	□ 자본시장법 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완료한 자(이하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아래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투자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유료회원 등을 대상으로 매수도 종목, 가격, 시점 등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②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연동을 통해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 (예) 카피트레이딩(특정 트레이더의 매매와 동일한 주문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AI주식자동매매(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매매종목이 선택되어 고객계좌에서 자동으로 집행) 등
회답	①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①번 방식과 같은 고객에 대한 개별적(1:1) 투자 조언은 금지됩 니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한정되므로, ②번 방식과 같은 자동매매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등을 운용(취득· 처분 등)하는 것은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①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대법원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의 구분에 대해 동일 취지로 판시 하고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특정 시점 내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채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020 판결, 서울남부 2011. 4. 28 선고 2010노2044 판결)
- ② 자본시장법 제6조제8항은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투자판단 권한이 일부라도 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투자자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종목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등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업할 경우,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해당되어 자 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Auto System Trading"에 대한 '17.5월 '17.9월 법령해석 회신사례 참조

법령해석 회신문(210145)

질의요지	 고본시장법시행령 제102조 1항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경우 단체채팅방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고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금융소비자법에 따라개별 고객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등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의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규정되어있어, 투자자문업자가 겸영할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 등록 이후 투자조언 행위는 개별적인 것이나 개별적이지 않은 것 모두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할 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폐지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른 보고 필요) ②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의 영업수단내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 따라서, 투자자문업자로서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라면 단체채팅방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47)

질의요지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
	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해당 온라인 방송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종류는 구독자·조회 수에 따른 광고수익, 구독자들의 간헐적 후원 및 정기적 구독료로 구성됨
-151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 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① 유료회원제 운영(예: 멤버십 서비스)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회답	②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③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다만,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
이유	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 해당 합니다.
	○ 투자조언의 대가성 여부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과 관 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멤버십 서비스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투자조 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반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이 누구나 동일한 투자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조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다만, 후원한 시청자의 개별 질의에 응답하거나, 유료회원과 1:1로 상담하는
등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
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03)

질의요지	□ 은행이 일임형ISA를 ETF 및 상장주식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ETF 및 주식을 집합주문·매수하고, 그 ETF 및 주식을 일임형ISA 고객인 투자자 계좌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은행이 일임형ISA를 운용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개별 투자자의 ETF 및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정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98조에 위반됩니다.
이유	 □ 질의하신 일임형ISA에서의 ETF 및 상장주식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권사에 은행 명의의 중권계좌를 개설하여 동 증권계좌를 통해 개별 투자자의 ETF·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해 주문하고,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평균매매가액을 기준으로 ETF·주식의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정산합니다. (ETF·주식은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8호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 영 제99조제2항제4호 및 규정 제4-77조제4호는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방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ETF·주식을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보유·운용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ETF·주식이 상시적으로 일임업자의 명의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영제99조제1항제4호 및 규정 제4-77조제4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는 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예탁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임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금융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방식은 투자자의 증권을 일임업자인 은행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로써, 투자자 계산의 재산을 은행 고유계정 의 증권계좌에 보유하고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은행업 등에 서 허용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04)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 겸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인 증권회사의 주식중개서비 스를 이용하여 퇴직연금(DC, IRP) 신탁 가입자인 고객으로부터 운용 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예: 30분)를 두고 ETF(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를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질의하신 퇴직연금 신탁에서의 ETF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투자자가 ETF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ETF 종목, 가격, 시점등을 정해 매매를 지시하면, ○ 투자자별 계좌번호가 설정된 은행 명의의 제휴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ETF 매매가 집행되어 투자자의 신탁계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신탁(퇴직연금 신탁 포함)에서의 ETF 운용은 ETF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 종목·가격·시점 등을 정해 주문하면 즉시 또는 일정한시차를 두고 투자자의 신탁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를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발생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ETF 위탁매매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ETF 위탁매매업무는 일반적인 펀드의 판매·환매와는 다르게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구)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의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 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08)

질의요지	 □ 상장회사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한 경우, 앞선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후속 자기주식 취득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미경과하였을 경우, ○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마지막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
	면 자기주식을 취득한 각각의 날로부터 처분가능일을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
	② 상장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 자본시장법령상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라도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제2항제6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 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답	 따라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718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제2항제6호 바목은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 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자본시장법 §165의3)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효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취득처분으로 인한 시장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 한 회사의 재무건전성 저해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제한 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제2항제6호는 취득의 목적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간은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으로 인한 인위적인 시장가격 왜곡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처분 가능일은 최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완료일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제2항제6호 단서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처분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따른 대가 조로 계약 상대방에게 자기주 식 및 보유예정인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 이와 같은 약정체결을 할 당시에 이미 자기주식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채무이행 등의 사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377)

질의요지	 □ 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의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 원회가 인정한 회사는 감사인이 지정됨(외부감사법 제11조제1항제10호) ○ 이때 표준 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구체적인 의미는?
회답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다음과 같이 법령 등에 따라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시간의 충분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한 사항(외부감사법 제10조제5항)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관련된 회사의 선정기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감사인 후보평가 과정(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감사인 선정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외부감사법 제10조 제6항)
이유	 □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423)

질의 요지	□ 현재 회사의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A회계 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행중인 용역업무를 수개의 과제로 분리 하여 일부 과제를 제3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수행하는 경우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A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 업무는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판단되며, A 회계법인이 모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무제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업무를 수개의 하위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3의 법인으로 이관하여 계속 이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이유	 □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자료 작성이나 재무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수행중인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모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은 그 자회사에 대하여도동일하게 업무 관련 제한이 적용). ○ A회계법인이 수행중인 IFRS17 회계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제2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을 수개의 업무로 분리하여 일부를 제3의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직무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리된 개별 업무의 세부 내용이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의 분리 가능성 및 그 정도,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의 업무 비중 및 상호간의 관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업무를 수개의단위로 분리하여 별도의 업체에서 수행한다는 사실 만으로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음.

법령해석 회신문(210442)

질의요지	□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중립투표(Shadow voting) 의무가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하단의 이유 참조
이유	(1)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에 속한 의결권 행사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7조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를 준수하면서 자율투표를 하되(법 제87조제1항),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의결권 행사 대상회사가고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중립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87조제2항) ○ 다만,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중립투표를 할경우 펀드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법인의 합병, 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중립투표의 예외를 인정(법 제87조제3항)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본시장법 제87조제4항은 일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자산운용사의 펀드재산에 속하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21.10.21. 시행)으로 자산운용사가 일반 사모편 드에 속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7조제4항 의 적용을 배제(법 제249조의7제6항) 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및 의결권 행사 등을 주요 운용전략으로 하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 경영참여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는 경우, 이를 설정·설립보고서,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경영참 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 설정·설립 및 운용을 명시적으로 허 용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이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 경영개선 등을 통해 펀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이외에도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한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자산운용사의 자율투표는 경영참여 목적 달성을 통한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에만 적용되므로 경영참여 목적 인 일반 사모펀드에 속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 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에서만 자율투표가 허용되며,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 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 거래 관련
- □ 자본시장법 제84조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계열 회사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거래에 한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법 제84조 제1항 및 영 제85조)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펀드재산 운용시에도 자본시 장법 제84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의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경영 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 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 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법령해석 회신문(190052)

질의요지	□ 신용카드 승인서비스 등의 확대를 위한 기술보안 인증 신청
회답	□ 동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대상이며, 현재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 려드립니다.
이유	 □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였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을 기점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를(1.21~1.31) 받아 우선심사 대상 선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귀하의 요청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에도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2.7일 배포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65)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 3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을 여 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한 도를 '연계대출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을 여러 회차에 나누어 모집할 수 없고,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3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이로써 해당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 이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연계대출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와다르게 전체 투자금이 모집되기 이전에 일부 투자금만을 분할모집・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 한도는 법 제35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72)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준용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법인인지 ② 온라인투자업자인지
회답	□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과 관련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본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유	 □ 감독규정 제13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호는 제한되는 이용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구조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이 개인인 경우는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동항 제2호가 각 적용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법 제5조 제1항 제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상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본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인 규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42)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동일 차주에 대출한도의 예외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하 "사업")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법 제 3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6호)
	○ 위 예외 규정 해석 관련하여, (1) 공공기관등이 직접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하여는 경우에도 법상 예외요건인 공공기관등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해석되는지, 그렇다면 지분율 등에 제한은 없는지 (2) "직접"과 관련하여, (i)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ii)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iii) 공공기관등 또는 공공기관등이 출자한 법인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만일, 위 (i)과 같은 해석이라면, "직접 필요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단서의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의 예외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제32조제1항제2호에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토지・건 물 매입비,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범위는 사업의 목적 및 범 위,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하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라 함)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하 "국가등"이라 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 업 등(이하 "지역개발사업등"이라 함)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 사안은 국가등이 직접 지역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국가등이 민 간기업과 함께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 먼저, 법령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등)으로 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은 국가등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추고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목적법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소정의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합니다.
- □ 또한, 입법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제1항제2호 소정의 국가등의 의미를 국가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욕하였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6조 등과 같이 그러한 취지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을 터인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그러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등의 의미를 국가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더욱이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은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양자택일만 가능하고 국가등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차등적・비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바, 만약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국가등이 극히 일부의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차입자 대출한도규정의 예외가 적용되게 되어 적용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규정의 예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등이 출자자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제32조제1항제2호에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때 직접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토지·건물 매입비,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그 범위는 사업의 목적 및 범위,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90)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총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여신 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는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하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이라 함)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유	 첫째,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 호에서 여신금융기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투자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항은 제1호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동조 제3항은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투자한도를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과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각각이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둘째,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은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 도를 규정(이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데, 동항의 개 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은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각 호에서 소득적격투자자, 일반개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투자한도(연계 투자 총액한도 및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을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특정한 일반개인투자자 의 투자한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전체 일반개인투자 자로 해석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득적격투자자 및 일반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총금액이 각각 1억원, 3천만원에 불과 하게 되는 등 사실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게 되는바 위 규정은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전 체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특정한 일반개인투자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인투자자 투자한 도 규정과 그 형식이 동일한바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에 대하여도 전체 여신금융기관, 전체 법인투자자, 전체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정 여신금융기관, 특정 법인투자 자, 특정 전문투자자가 각각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다만, 투자금 모집,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법 제2조제1호 참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르 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 리금의 상환 등 업무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 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임의로 개인투자자를 배 제한 채 여신금융기관등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 또한, 법 제35조제3항 전단은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가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신금융기관등이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연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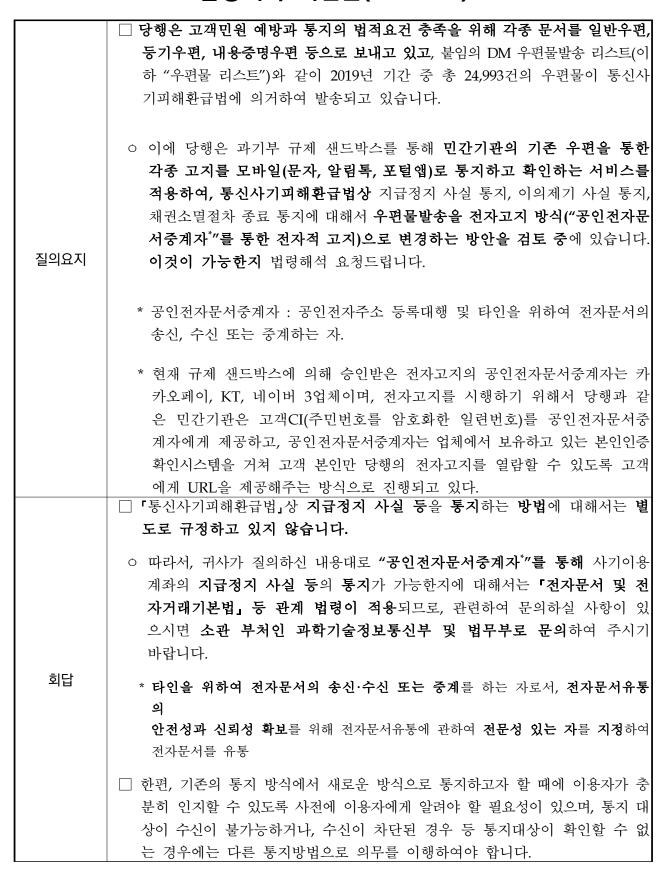
질의요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에 있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 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신청인의 의견 ○ 온투업법 제정 당시,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해당 특례 조항에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 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단,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온투업법 제35조 3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회답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 참여를 통한 P2P금융 시장 활성화, 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연계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5조 제1항).
	○ 다만, 기존 금융업 규제 우회, P2P금융의 금융회사 대출중개 역할로의 기능 축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는 연계투자 한도, 위탁금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35조 제1항 및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15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또는 신용공여로 간주하고, 여신금융기관 등은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명시(동법 제35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연계투자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 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 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한도 및 여신 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 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 나.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적인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체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정 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 의 체결·해지 업무 등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 2. 내부감사업무
 - 3. 위험관리업무
 -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업무
 -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 6. 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계투자한도 및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위탁금지 업무 등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상 관련 규정 및 여신금융기관 등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금융

법령해석 회신문(200264)



□ 귀사는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 급정지 사실 통지(같은법 제4조제4항), 지급정지 이의제기 사실 통지(같은법 제7조제2항), 채권소멸절차 종료 통지(같은법 제8조제3항)를 전자적 고지의 방식으로 수행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사실 등을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대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등의 통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기본법」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므로,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 으시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이유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유통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 있는 자를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유통 □ 한편, 기존의 통지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에 이용자가 충 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통지 대상이 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수신이 차단된 경우 등 통지대상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9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
질의요지	 ○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확보 후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설 →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 고객정보 변경 → 모바일슈랑스로 타인의 보험 환급금대출 후 사취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1)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체신관서도 환급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약하는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비대면 거래 포함) 불분명
	2) 제2조의5(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체신관서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험 증서(계약)에 대하여 대출 등을 정지하는 임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3)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4조(지급정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증서(계약)에 대하여 대출 등을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신 관서에서 보험증서(계약)에 대하여 대출 등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4)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감독원에서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체신관서에서 명의인의 보험증서(계약)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불분명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 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 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회답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같은 법 제2조제2호)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제2조의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1호에 따른 "금융회

사"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통신사 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제3조, 제4조, 제13조의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 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 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 기"인 사기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 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 문입니다. ○ 그러므로,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5),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제3조 및 제4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제13조의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공갈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보험 환급금 대출금)이 사기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송금·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상기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기범이 메신저피싱 등으로 신용정보 등을 탈취하여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후 보험 환급금대출금을 갈 취하는 사기행위에 대하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피해구제 절 차 진행 및 지급정지 조치,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 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용계좌*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 체하는 행위(같은 법 제2조제2호)
- □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책임(제2조의4) 등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1호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체신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 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다음으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은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2조의5, 제3조, 제4조, 제13조의2 적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해당 여부는 피해금이 사기 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송금·이체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만일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만 받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정의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사기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금융회사등이 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제2조의5), 사기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자의 피해구제(제3조 및 제4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제13조의2) 조치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공갈함으로써 피해자 명의계좌로 보험 환급금 대출을 받고 연속적으로 피해자 명의계좌에서 피해금(보험 환급금 대출금)이 사기이용계좌(제3자의 계좌)로 송금·이체한 경우로서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상기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3)

질의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전자화폐의 요건 중 하나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그런데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는 이용한도를 200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경우 사용자 당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히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의미는,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유	□ 귀사의 ①번 질의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의 의미는, 일정한 가치(금액)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금액)여야 하며, 예금·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의 ②번 질의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의 발행권면·충전 최고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40)

질의요지	1. 전자적 정보로서 포인트 형식의 선불전자지급수단[1point=1원, 이하 '포인트'라고 청함]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이용자의 '보유한도'를 의미하는지 2. [위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보유한도'를 의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포인트의보유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시 이용자 인별(人別) 기준인지, 포인트 발행사별(發行批別) 기준인지, 아니면 포인트 종류별(種類別) 기준인지, 포인트 발행사별(發行批別) 기준인지, 아니면 포인트 종류별(種類別) 기준인지 3. A사(社)가 a포인트를, B사(社)가 b포인트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a포인트와 b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4. A사(社)가 a포인트와 b포인트를 발행하고, 이용자가 a포인트와 b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5. A사(社)가 a포인트를 발행하고, a포인트를 현금구매로 충전할 수도 있고(a1), 카드이용 시 적립될 수도 있는데, 이를 a1과 a2라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포인트 각각은 보유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합산하면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법한지
회답	□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발행사별·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만원(무기명), 200만원(기명식) 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유	 □ 귀사께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이용자 인별 기준인지, 포인트 발행사별 기준인지, 포인트 종류별 기준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무기명식은 50만원, 기명식(「금융실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실지명의로 발행)은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제23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이에 따라,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인별·발행사별·포인트 종류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각 선불전자지급수단마다 최대 금전적 가치로 50만원(무기명), 200만원(기명식)까지 저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45)

질의요지	 □ 신규 앱내 사용되는 코인이 전자금융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2조제14호)에 해당되는지, 동 방식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2조제19호)에 해당되는지? ※ 당사는 화상외국어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플랫폼(한국법인)으로 ① 구매자(국내외, 개인·법인)가 구글페이로 코인을 충전하고 ② 판매자(국내외, 개인·법인)가 업로드한 화상강의서비스를 구매하면 ③ 구매자의 코인은 감소하고, 판매자의 코인은 증가(중개플랫폼 수수료 차감) ④ 판매자가 적립된 코인중 인출(사전에 인출단위가 정해짐)을 요청하면, 당사(중개플랫폼)가 은행을 통해 송금(필요시 해외송금)하는 구조임 * 코인은 화상강의 서비스 구입용도로만 활용가능(현실 환전소 사용불가 등) ** 당사가 판매자의 인출내역을 날짜별·이용자별 엑셀자료로 정리 및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량 업로드
회답	□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라,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결제대행업무"인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상 "전자지급거래"인 지급인(구매자)이 귀사로 하여금(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판매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서,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 지급수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코인이 귀사의 플랫폼 내에서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는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 을 대행·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지급인)자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기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업무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 을 대행·매개하는지 여부와,

지급인(구매자)이 귀사로 하여금(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수 단을 이용하여 수취인(판매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로 서, 전자지급거래에 따른 결제를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29)

질의요지	□ 당사는 각 기업, 관공서등(이하 고객사)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마트, 식당, 카페등 다수의 사용처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처에서 사용시 사용된 포인트를 고객사에 청구하여 사용처에 지불하고, 사용처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고객사가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예산)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3항1호 다 목의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여짐.
	□ 고객사의 임직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고객사에 청구하고 있고 미 사용된 복지 포인트는 사용기간 이후 소멸되기에 미상환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 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로 보여 짐. 위 사항으로 당사 운영 중인 사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허가 또는 등록 면제 등)에 해당되어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합니다.
희답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 다목은,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 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의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을 영위하 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이용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 사로부터 청구하는 경우로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	□ 귀사께서는 고객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극장, 마트 등 사용 처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처에 서 이용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선 지급하고 고객사에 후 청구하여 대금 을 받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28조제3항제1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 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로서 전자금융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 영위 가능
-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 다목은, 선불업자가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별도로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객사가 임직원(이용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이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귀사가 사용처에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고객 사로부터 청구하는 경우로서,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어려운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다목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3)

질의요지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이란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해 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독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로서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란, ○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정보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등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한은 이용자 보호 및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 예고 ('13.4.16., '13.6.19., 보도자료) ○ 위탁자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도 별도의 제재(과태료 등)가 없는 점을 감안할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 수단이 필요한 점,

- 정보처리 업무 수탁자에 대해서는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감독·검사를 할 수 없어, 위탁자 인 금융회사를 통해 감독·검사가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긴밀한 협조 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 그런데, 정보처리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제재사유인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있어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가능성 확보 등과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업무 위탁이 제한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등 다른 정보보호 법제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 털전환 현상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금융회사의 정 보처리 업무 위탁이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한사유가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된 제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란,
 - 금융이용자의 정보관리, 감독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검사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제한 사유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보 처리 업무 위탁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지만,
 - 감독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 벌을 받은 경우로 확대해석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9)		
질의요지	□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해당하는 해외 그룹사의 국외 인사관리 시스템에 직원의 고유 식별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5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의 대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구 등 	
이유	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따라서, 금융회사의 인사업무 처리를 위한 임직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처리업무 위탁규정 제5조에 따라 국외 이전이 제한되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고 고객정보와 무관한 정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아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 주체의 사전동의 요건 등정보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73)

질의요지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 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전자금융감독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 단순평균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함

법령해석 회신문(210026)

질의요지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 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적용되는지?
회답	□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제 3조제3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전자금융감독규 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3조제3항 및「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전자금융거래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특히,「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23)

질의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하여,
	(쉽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해석이 다름)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쉼표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됨
회답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3조의2 제1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20.5.19일 개정하였으며,
이유	 개정 취지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이후 지급정치 조치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항제5 호에 해당하는 범죄
	□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은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299)

질의요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a 포인트, b 포인트)을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가 가능한 경우, a 포인트와 b 포인트는 각 별도로 전자 금융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적용 받는지 여부.
회답	□ 「전자금융거래법」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한편,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귀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복수의 선불전 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한편,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419)

질의요지	□ 은행이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정보통신 망법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시, 그러한 사업 이「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회답	 □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전자금 융거래법」(§2)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약관에 관한 규정(§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유	 □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전자금 융거래법」(§2)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약관에 관한 규정(§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법령해석 회신문(200115)

- ①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 *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推尋)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⑤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질의요지

- ②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 동일 상품의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 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 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 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 는 경우 ③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 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 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관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이행이 불가능 회답 한지 여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 보를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관계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이 소멸하거 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가채권 관리법」제 24조제2항은 사정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이유 경우 관리정지 처분을 지체없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관 리정지로 더 이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다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관리정지로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정지의 성질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법 : 소관 부처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주택도시기금법의 규정의 해석상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용 여부 등)를 영구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률"에 따른 "의무"인지 여부는 「주택 도시기금법」 및 관련규정의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신용정보법」제20 조의2 제2항 제3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2 제3항 제2호는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주택도 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도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5)

질의요지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 관에게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 통지의무가 있다면, 같은 조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해당 정보 등록 이 예상되는 날짜'를 기재해야 하는지
회답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 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는 채무자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 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 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시행(2018.9.5.) 참조)
	 최초 연체정보제공이 아닌 정보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제공 인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무관하므로 제3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체채권으로 등록된 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등록기관의 변경을 위해 동일정보를 재제 공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의무를 갖는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51)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실제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비교하여 입금예정금액을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
질의요지՝	-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 불규칙한 입금주기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사업자의 ¹⁾ 경영관리서비스*(지출관리, 각종 세금신고 등) 및 ²⁾ 금융서비스(경영지원 자금 대출, 물품대금 서비스 등) 제공 * 사업자의 소득·지출금액 관리를 통한 장부기장 및 원천세 등의 신고 대행, 보험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
회답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신용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그 신용정보주체에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제2조제9호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 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에 따른 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상 정보주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으로 구분되며, 그 중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은 '기업'에 해당합니다.

- □ 따라서, 귀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을 위해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 합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53)

질의요지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조제6 항제9의2호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업무 목적 달성 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6.12)」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87)

질의요지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신용정보법 제32조제6 항제9의2호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 업무 목적 달성 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6.12)」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88)

질의요지	□ A社가 A社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초정보*를 B社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B社는 B社가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일부 정보**를 보충하여 B社의 지도를 비롯한 B社 서비스에 게시 및 A社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예정인 바, 상기 방안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A社의 정보: 신용카드가맹점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B社의 정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홈페이지 주소, 주차・예약 가능 여부, 장소명,
회답	 □ A사가 B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기업 및 법인의 식별정보이나,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의 신용거래내역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용·제공상 제한을 받습니다.
이유	 □ A사가 B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나,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 즉, 법령해석 요청서 상 A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 제공에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가맹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받아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참조).

법령해석 회신문(200451)

질의요지	□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고지해야하는 우편물(등기우편, 일반우편 등)을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상기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생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은행 등「신용정보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①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으며, ^② 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200262('20.10.12) 참조)
이유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 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주민등록법」제7 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 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우편물 등)이 주민 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통해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 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44)

질의요지	□ 한국산업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보존기간의 기산일과 파기시점에 있어서, 「신용정보법」과 「공공기록물법」 중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신용정보법」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공공기록물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해당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 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의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 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 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2호는 「공공기록물법」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 보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제27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공기록물은 기록 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후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와 폐기에 대해 강화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처럼 「공공기록물법」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해당기록물 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고 「공공기록물법」절차에 따른 평가 및 폐 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기관의 기록정보 자료가 「공공기록물법」의 공공기록물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공기록물법」 소관 부처의 판단사항에 해당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73)

질의요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이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식별자로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제공·이용자등은 동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074)

질의요지	 □ 정부기관이 정책연구 목적으로 은행에 퇴직연금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요청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32조에 따라 은행은 정보주체 동의없이 퇴직연금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 신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은행은 정책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퇴직연금 데이터 등)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부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며, ○ 은행의 가명처리된 퇴직연금 데이터와 공공기관의 가명처리된 공적연금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 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17조의2, 제40조의2 등 데이터 결합 및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정법 제17조의2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신정법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165)

질의요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1.5.26.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에 따라, 특례가 부여된 "본인확인 연계정보(CI) 일괄 변환"을 신청(방송통신위원회 앞)하고자 하는 기관([별첨])들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문의주신 신청기관은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 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자,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4항 각 호 또는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정의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동조 제5항에서는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신청기관은 각각의 관계법령에 따른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대부업자, 기간통 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모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 각 호 또는 동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모두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3항 제1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해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10429)

질의요지	□ 재보험위험 계약인수 심사 지원업무 등을 위탁하는 목적을 위해 미국-재보험사의 국내지점이 정보주체 동의없이 미국 재보험사 본점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신용정보법에 따라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국내에 위치한 지점에서 미국 본점으로 개인 신용정보 이전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령에서 정보의 이전을 제한 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제 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전)이가능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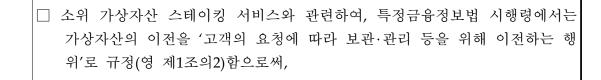
법령해석 회신문(210226)

	질의 요지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2 차등보험료율제가 2014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부보금융회사(저축은행)에 발생하는 예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절은 보험관계가 성립(예금등 채권의 발생시점)하는 시점(\$29조)이며, - 예금 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30.①)되므로 구체적 보험료 납무의무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② '14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 산정 ○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대년 예금등의 잔액에 대통령령(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으로 정비율(이하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각 부보금융회사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으로 정하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이하 "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니다. ○ 따라서, 동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적용된 보험료(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합니다. * 연간 보험료(제축은행 기준)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9 110) ○ 다만, 예보료 산정체계상 매년 예금등의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고, 치요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은 예보법 시행령(\$16 및 별표1)에서 규정고 있으므로, - 실질적으로 부보금융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예금등의 잔액 확정시절에 예금등	회답	 ○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법률적 채권채무 발생시점은 보험관계가 성립(예금등 채권의 발생시점)하는 시점(§29조)이며, - 예금 보험료는 사업연도 부보예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30.①)되므로 구체적인 보험료 납무의무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 성립합니다. ② '14년도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이후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 산정 ○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매년 예금등의 잔액에 대통령령(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1)으로 정한 비율(이하 "고정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각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동 법 시행령 제16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이하 "차등보험료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법 제30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된 보험료(예보법시행령 제16조의2)를 의미합니다. * 연간 보험료(저축은행 기준) 산식: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차등요율((고정요율)90~110) ○ 다만, 예보료 산정체계상 매년 예금등의 잔액은 사업연도 결산시 확정되고, 차등 요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고정요율은 예보법 시행령(§16 및 별표1)에서 규정하

	· · · · · · · · · · · · · · · · · · ·			
		<참고 : 차등모형평가등급별 차등보험료율(예보 규정)>		
	◇ 연혁(14년~)	◇ 연혁(14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년, 2015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5/100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1/100
	 2016년	"	"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2.5/100
	 2017년, 2018년	n	"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5/100
	 2019년, 2020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3/100	"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7/100
	2021년 이후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90/100	"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10/100
	◇ 현행(22년~)			
	구 분 A+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임됴뀰의 따근 모임됴뀰의		제16조제1항에 영 제16조제1항이 · 보험료율의 따른 보험료율9 /100 110/100
	30/100	93/100	107/	100 110/100
이유	□ 회답과 동일			

법령해석 회신문(210447)

질의요지	□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회답	 □ 사업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공개키, 개인키 등)을 생성해 주는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방식의 소위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배포('21.3월) 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중 하나로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제시하면서, ○ 이의 제외사유로서 ①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②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④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의 경우 등을 예시로 안내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이 직접 개인키를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 별도 개인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경우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바에 따른 방식의 관리(특정지시)'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의 관리(불특정 지시)'는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회 논 의결과에 따라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